



질병관리청

# 보도참고자료

배 포 일	2021. 2. 16. (총 29매)	담당부서	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팀 장	이 선 규	전 화	043-719-7430
담 당 자	최 상 미, 최 은 경		043-719-9365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4,325명(해외유입 6,747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0,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4,597건(확진자 82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5,227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7명이다.
-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757명으로 총 74,551명(88.41%)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8,240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66명, 사망자는 7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534명(치명률 1.82%)이다.

###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2.1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29	155	17	11	19	2	4	7	0	129	4	7	58	5	2	2	6	1
누계	77,578 <sup>1)</sup>	25,623 <sup>1)</sup>	2,924	8,364	3,947	1,837	1,098	880	185	20,210	1,712	1,561	2,087	990	713	2,963	1,969	515

<sup>1)</sup> 지자체 신고 정정(2.15. 0시 기준, 서울 -1명)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2.16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중국 외)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신규	28	0	13	9	6	0	0	8	20	11	17
누계	6,747	39 (0.6%)	3,014 (44.7%)	1,173 (17.4%)	2,204 (32.7%)	294 (4.4%)	23 (0.3%)	2,884 (42.7%)	3,863 (57.3%)	3,681 (54.6%)	3,066 (45.4%)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1명), 러시아 7명(4명), 인도네시아 3명(3명), 사우디아라비아 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프랑스 3명(2명), 폴란드 1명, 독일 3명(1명), 루마니아 1명(1명), 터키 1명, 아메리카: 미국 3명(3명), 멕시코 1명, 브라질 1명, 에콰도르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 【확진자 관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2.15.(월) 0시 기준	73,794	8,547 <sup>1)</sup>	156	1,527
2.16.(화) 0시 기준	74,551	8,240	166	1,534
변동	(+)757	(-)307	(+)10	(+)7

\* 2월 15일 0시부터 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 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1)</sup> 지자체 오신고 정정(2.15. 0시 기준 서울 -1명)



□ 2월 16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2월 16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380.7명), 수도권에서 303명(70.6%) 비수도권에서는 126명(29.4%)이 발생하였다.

(주간 : 2.10일~2.16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2.16일(0시 기준)	429	303	69	9	13	30	4	1
주간 일 평균	380.7	297.6	23.1	11.6	14.3	28.0	4.9	1.3
주간 총 확진자 수	2,665	2,083	162	81	100	196	34	9

○ 수도권

(주간 : 2.10일~2.16일, 단위 : 명)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344	383	299	257	243	2541	303	297.6	2,083
서울	169	177	155	131	147	1461	155	154.3	1,080
인천	18	25	41	29	19	9	19	22.9	160
경기	157	181	103	97	77	99	129	120.4	843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7명\*이다.

\* (구분) 환자 51명(지표포함, +11), 종사자 17명(+3), 보호자/가족 28명(+10), 간병인 14명(+2), 지인 7명(+4)

- (서울 강북구 사우나 관련) 2월 1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2명\*이다.

\* (구분) 이용자 18명(+4),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13명(+3), 지인 8명(+1)

- (서울 구로구 체육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28명, 가족 6명(+3), 기타 5명(+4)

- (서울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68명\*이다.

\* (구분) 교회1 관련 21명(지표포함), 교회2 관련 5명, 어린이집 관련 6명, 식당 및 커뮤니티모임 관련 14명(+2), 기타 22명(+2)

- (인천 서구 직장/전북 전주시 음악학원 관련) 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6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인천 서구 직장관련	5	종사자 3명(지표포함), 가족 2명
② 전주시 음악학원 관련	11	학원생 2명, 강사 2명, 가족 6명, 지인 1명

\* (추정감염경로) 직장 종사자 → 가족/음악학원

- (경기 광주시 제조업2 관련) 2월 1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직원 5명(지표포함), 지인 2명, 기타 4명

- (경기 남양주 주야간보호센터/포천 제조업체 관련) 접촉자 조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주야간보호센터 관련	14	이용자 10명(지표포함), 가족 3명, 종사자 1명
② 제조업 관련	9(+3)	종사자 7명(+3), 기타 2명

- (경기 고양시 (춤)무도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7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무도장 1	74(+2)	방문자 44명(지표포함, +1), 가족 20명(+1), 기타 10명
② 무도장 2	3	방문자 3명

- (경기 여주시 친척모임2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가족/친척 24명(지표포함, +2)

\* (지역) 경기도 여주 14명, 경기도 이천 3명, 전남 나주 5명, 인천 연수구 1명, 경기 광주 1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1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51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영생교 관련	106(+15)	교인 및 교인 가족 97명(+11), 기타 9명(+4)
② 보습학원 관련	45(+4)	학원생 29명(지표포함, +1), 학원 교사 3명(+1), 기타 13명(+2)

○ 충청권

(주간 : 2.10일~2.16일, 단위 : 명)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5	6	19	28	20	15	69	23.1	162
대전	-	2	1	5	2	6	4	2.9	20
세종	1	-	2	5	2	-	-	1.4	10
충북	2	3	6	4	5	-	7	3.9	27
충남	2	1	10	14	11	9	58	15.0	105

- (충남 아산시 난방기공장 관련) 2월 1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5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4명\*이다.

\* (구분) 종사자 44명(지표포함), 가족 10명

- (충남 당진시 유통업체 관련) 2월 8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2명\*이다.

\* (구분) 종사자 37명(지표포함, +3), 가족 14명(+2), 기타 1명(+1)

○ 경북권

(주간 : 2.10일~2.16일, 단위 : 명)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6	11	15	18	7	20	13	14.3	100
대구	14	10	11	14	3	12	11	10.7	75
경북	2	1	4	4	4	8	2	3.6	25

- (대구 동구 음식점 관련) 2월 1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가족 3명(지표포함), 종사자 6명, 종사자의 가족 1명

○ 경남권

(주간 : 2.10일~2.16일, 단위 : 명)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27	36	29	32	21	21	30	28.0	196
부산	18	29	25	26	12	15	17	20.3	142
울산	-	2	-	2	3	3	7	2.4	17
경남	9	5	4	4	6	3	6	5.3	37

- (부산 북구 장례식장 관련) 2월 1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방문자 4명(지표포함), 동료 5명, 지인 1명, 기타 1명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의료기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중심의 집단발생 지속에 따라 감소세가 정체된 상황이라고 밝히며,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과 당부사항을 설명하였다.

-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사람 간 접촉 증가 등에 따른 확산 위험이 있다.

\* 수도권 25단계 + 비수도권 2단계 → 수도권 2단계 +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2.15~28)

- △설 연휴 가족·지인 간 접촉, 지역 간 이동 후 일상 복귀에 따라 가족 간·지역 간·직장 내 감염 확산, △유흥시설 집합금지 해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완화로 이용 인원·시간 증가,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 집단감염 지속 발생 등 확산 위험이 있다.

- 특히, 이번 이슬람 종교 관련(성원, 예배소, 사업장 등), 용산구 외국인 모임(교인, 지인 등), 외국인 친척 집단감염 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결된 공동체적 성격의 외국인 커뮤니티 특성으로 △지역사회 ↔ 사업장 ↔ 외국인 커뮤니티 간 전파, △해외입국자 →국내 외국인 접촉으로 인한 감염 증가 위험이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따른 정밀방역 대응 및 자율·책임 기반 방역관리 강화, △미인가 교육시설,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 등 방역 사각지대 발굴·점검 및 방역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 또한,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종교시설의 방역관리 강화를 지속하고, 외국인 커뮤니티 지역사회 감시와 확진자 지속 발생 유행 지역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지속한다.
- 국민들께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여행·다중이용시설 이용자는 외출 자제·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받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상시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도 있다.
  - △변이바이러스 발생 국가 증가\*, △국내 감염 환자 증가(2월1주 54건 → 2월2주 94건\*\*) 등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다.
    - \* (영국 변이주) 83개국, (남아공 변이주) 39개국, (브라질 변이주) 20개국
    - \*\* 영국 75명(+35), 남아공 13명(+4), 브라질 6명(+1)으로 총 94명(+40)
  - 정부는 변이바이러스 유전체 분석대상·분석기관 확대\*, 분석 시간 단축\*\* 등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바이러스 점유율 고려한 방역강화국가 지정 및 항공편 제한 등 방역조치 강화를 진행한다.
    - \* (현행) 질병청 및 민간 1개(2개) → (개선) 질병청, 질병대응센터(5개), 민간 2~3개(8개)
    - \*\* (현행) 바이러스 전체 분석(5~7일 소요) → (개선) 변이부위 분석(3~4일 소요)
  - 또한,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3회 검사, 2.24~)하고, 변이발생국 격리면제제도 중단과 해외입국자가격리자도 특별관리(시군구별 '해외입국자 관리 책임관 지정' 및 증상 모니터링 강화)할 방침이다.
  - 방역당국은 변이바이러스 확산을 고려하여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까지 1인실 격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외에서 입국한 자가격리대상자 및 동거가족은 격리 해제 시까지 자가격리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이슬람성원, 대학병원,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주요 집단발생 사례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주의사항을 당부하였다.
  - 경기 안산시 소재 이슬람성원 관련하여 교인 총 19명(2.16일 0시 기준)이 감염되었으며,
    - 그 외 이슬람 종교시설 2곳의 이용자와 관련된 19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다.
      - \* 총 2개소 : 평택 이슬람예배소 15명, 대전 이슬람 기도모임 4명
    - 안산 이슬람성원의 주요 위험요인은 △방역관리자 미지정, △출입명부 관리 미흡, △실내 환기 불충분(예배당·사무실·숙박시설), △교인 간 소모임, △시설내 숙소 사용(15명이 한방에 거주)이 확인되었다.
  - 전국 의료기관 관련 집단발생은 '21년 1월 15일 이후 총 14건, 522명(2.16일 0시 기준)이 발생했다.
    - 지역별로 수도권 9건(64.3%, 서울 8, 경기 1), 비수도권 5건(35.7%)이었고,
    - 유형별로는 종합병원이 5건(246명), 요양병원 2건(105명), 재활병원 3건(77명), 병원·한방병원 3건(76명) 순이었다.
    - 위험요인은 △환자, 간병인의 마스크 착용 미흡 등 감염관리 교육·감독 미흡, △시설 내 유증상자 감시 미흡 등이 있었다.
    - 주요 전파경로는 간병인(보호자) 및 종사자를 통한 외부유입을 으로 병원 내 접촉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실내체육시설 집단발생의 경우 '21년 1월 이후 총 8건, 251명(2.16일 0시 기준)이 발생하였다.
    - 유형별로 수영장 2건(27명)과 헬스장 2건(50명), 무도장(72명), 태권도장(58명), 스크린골프장(26명), 탁구장(18명)에서 각 1건씩 발생하였다.

- 주요 위험요인으로는 시설별로
  - 탁구장과 태권도장의 경우, △비말 발생이 많은 신체활동, △운동 간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미흡, △실내 환기 불충분, △실내 마스크 착용 미흡 등 이었고,
  - 수영장과 헬스장은 △공용시설(풀장, 샤워실, 탈의실) 내 마스크 착용 불가 상황, △강사 등 종사자 의심증상 시 근무 배제 어려움 등 이었으며,
  - 무도장과 스크린골프장은 △방역관리자 미지정, △출입명부 관리 미흡, △실내 환기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이 확인되었다.
- 주요 전파경로는 이용자나 종사자를 통해 유입 후 동 시간대 이용자에게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이에 방역당국은 집단시설 및 실내 감염 예방 및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발견을 위한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 외국인도 모임 활동 중에는 생활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하게 검사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가 필요하며,
  - 의료시설은 감염관리 교육 및 방역수칙 정기 점검,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및 검사 실시 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실내 체육활동 시에는 이용자는 △의심증상 시 방문자제,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 △공용시설·물품 이용 최소화 및 마스크 착용 준수, 시설 관리자는 △최소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 △공용 물건 및 표면 매일 2회 이상 소독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설 연휴·거리두기 완화·사람 간 접촉 증가로 현재 상황보다 감염이 더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보고, 국민들께 철저한 거리두기 실천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특히, 이번 명절 기간에 가족·친지와의 만남, 식당·카페 등 이용을 통해 감염 및 전파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여행·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였을 경우, △가급적 외출을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철저,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더불어, 환자 수를 조속히 안정화하여, 백신접종 및 등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래 세 가지 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였다.
  - 첫째, 가급적 모든 사적인 모임은 취소하고 집에서 안전하게 머무르며, 종교 활동, 모임·행사는 비대면·비접촉으로 진행한다.
  - 둘째, 장소와 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사·음주·흡연과 같은 상황은 가급적 피한다.
    -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한다.
  -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신속하게 검사를 받는다.
    - 의료기관은 코로나19 의심 환자 또는 호흡기 증상 환자가 방문할 경우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여, 선별진료소에서 별도의 문진 절차 없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하였다.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5.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 <별첨> 1.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2.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3.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4.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5.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6.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8.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9.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0.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2.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3.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4.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9.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0.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1.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붙임 1 |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1 일일 확진자 현황 (2.16. 0시 기준, 84,325명)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 ('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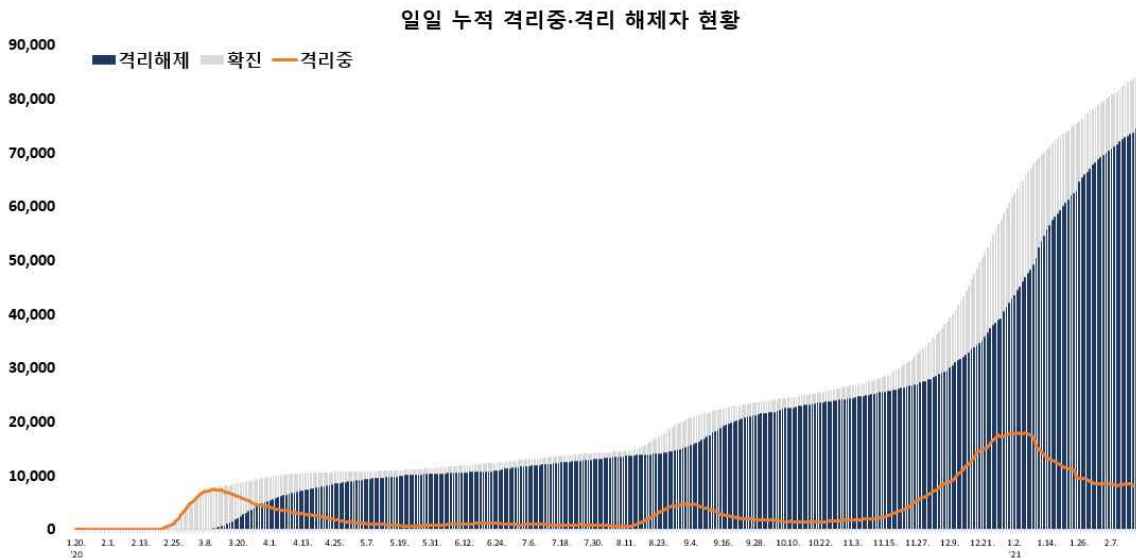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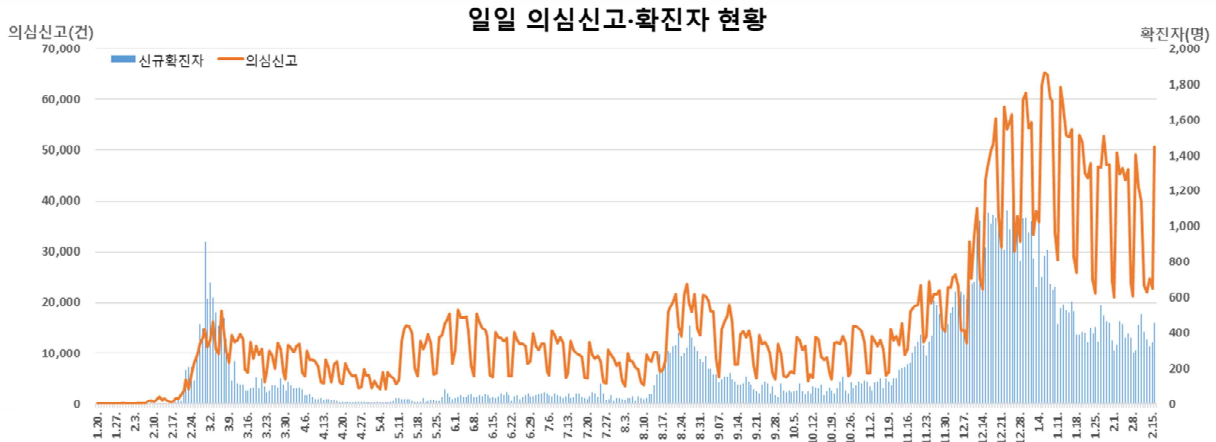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2.15.(월) 0시 기준	6,162,860	83,868 <sup>1)</sup>	73,794	8,547 <sup>1)</sup>	1,527	80,146	5,998,846 <sup>1)</sup>
2.16.(화) 0시 기준	6,213,490	84,325	74,551	8,240	1,534	76,897	6,052,268
변동	+50,630	+457	+757	-307	+7	-3,249	+53,422

\* 2월 15일 0시부터 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sup>1)</sup> 지자체 오신고 정정(2.15. 0시 기준 서울 -1명)



2 지역별 확진자 현황 (2.16. 0시 기준, 84,325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국내발생	해외유입			
서울	155	6	26,484 <sup>1)</sup>	(31.41)	272.09
부산	17	2	3,054	(3.62)	89.51
대구	11	1	8,503	(10.08)	348.99
인천	19	2	4,169	(4.94)	141.03
광주	2	0	1,951	(2.31)	133.93
대전	4	0	1,150	(1.36)	78.01
울산	7	0	966	(1.15)	84.22
세종	0	0	210	(0.25)	61.34
경기	129	5	21,648	(25.67)	163.38
강원	4	1	1,778	(2.11)	115.41
충북	7	0	1,649	(1.96)	103.10
충남	58	0	2,239	(2.66)	105.49
전북	5	0	1,093	(1.30)	60.14
전남	2	0	781	(0.93)	41.88
경북	2	1	3,104	(3.68)	116.58
경남	6	2	2,114	(2.51)	62.89
제주	1	0	548	(0.65)	81.70
검역	0	8	2,884	(3.42)	-
총합계	429	28	84,325 <sup>1)</sup>	(100)	162.64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1) 지자체 신고 정정(2.15. 0시 기준, 서울 -1명)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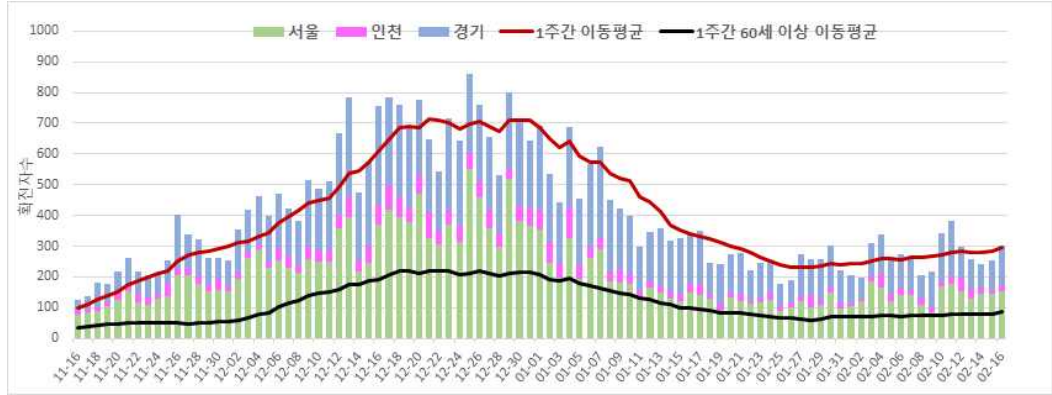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검역
격리 중	8,240	4,093	336	147	321	112	51	25	13	1,811	77	78	220	50	48	92	90	21	655
격리해제	74,551	22,032	2,617	8,145	3,797	1,820	1,084	904	196	19,369	1,665	1,513	1,986	990	725	2,942	2,014	526	2,226
사망	1,534	359	101	211	51	19	15	37	1	468	36	58	33	53	8	70	10	1	3
합계	84,325	26,484	3,054	8,503	4,169	1,951	1,150	966	210	21,648	1,778	1,649	2,239	1,093	781	3,104	2,114	548	2,884

\* 2월 15일 0시부터 2월 16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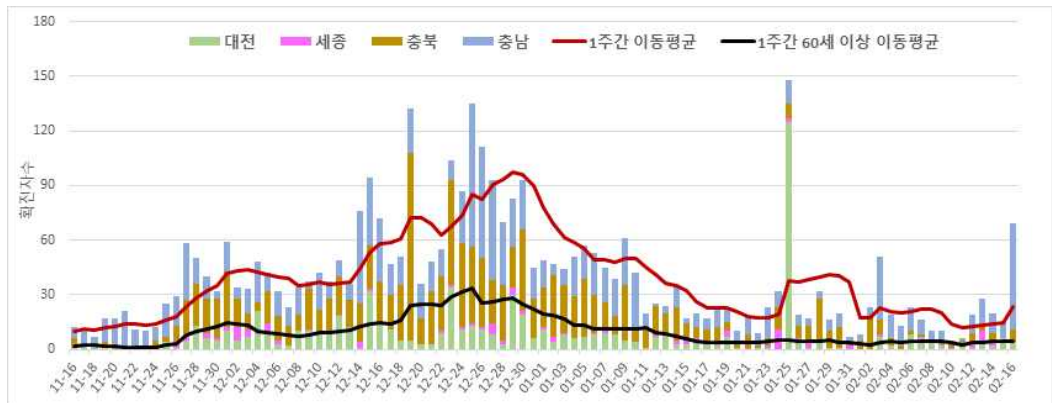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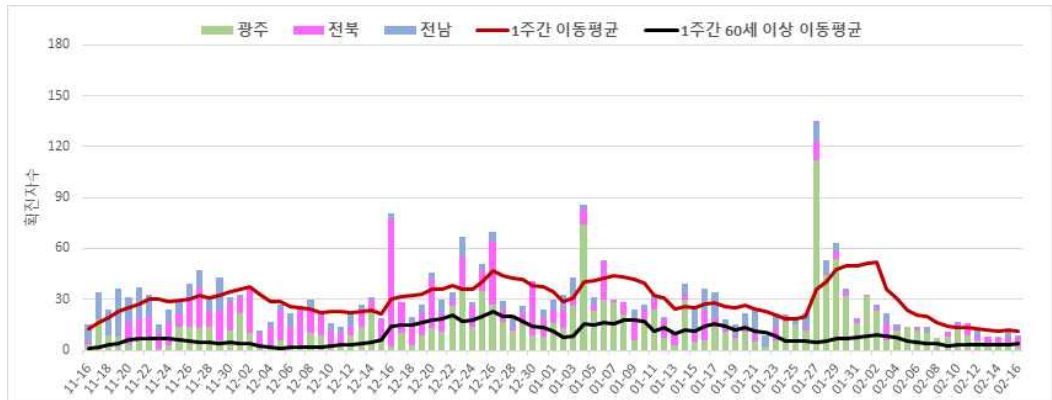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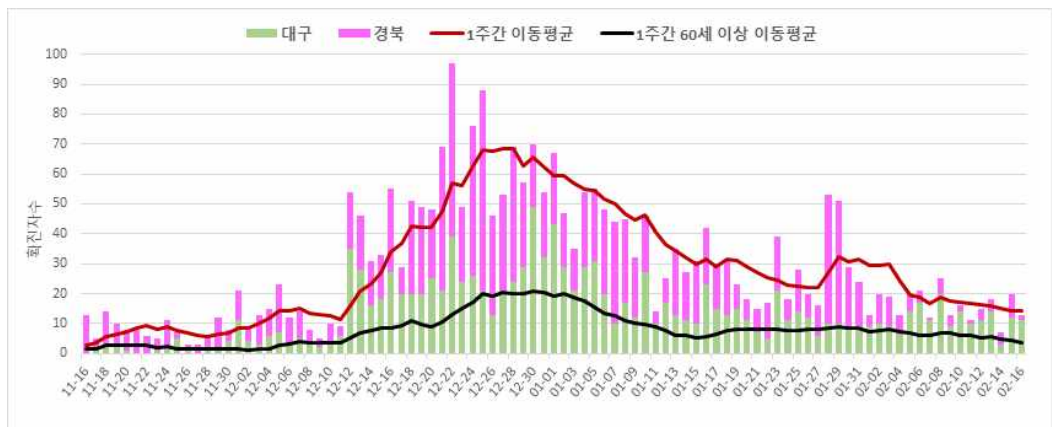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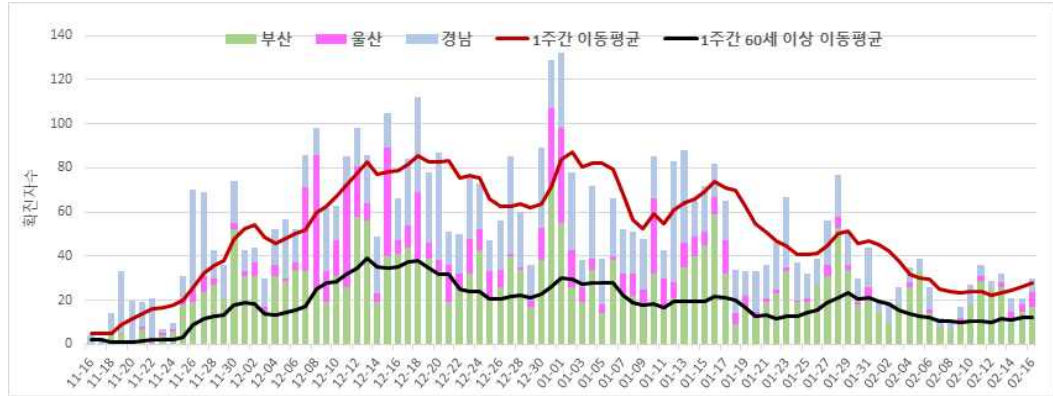


경북권  
(대구, 경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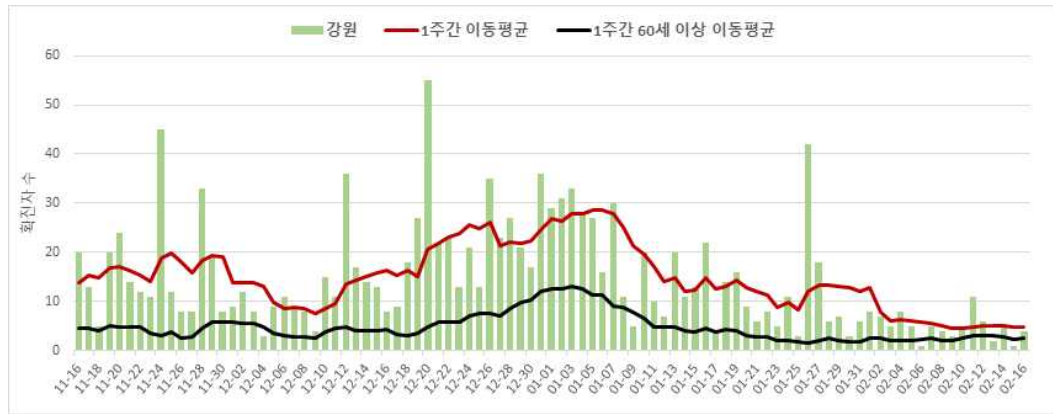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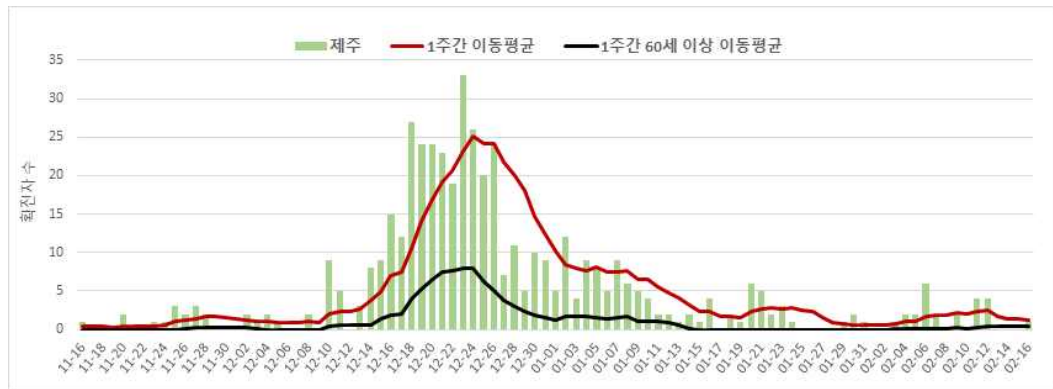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③ **성별 · 연령별 확진자 현황** (2.16. 0시 기준, 84,325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57 (100)	84,325 (100)	162.64
성별	남성	248 (54.27)	41,537 (49.26)	160.60
	여성	209 (45.73)	42,788 (50.74)	164.67
연령	80세 이상	15 (3.28)	4,170 (4.95)	219.56
	70-79	27 (5.91)	6,485 (7.69)	179.78
	60-69	67 (14.66)	13,248 (15.71)	208.82
	50-59	73 (15.97)	15,765 (18.70)	181.90
	40-49	78 (17.07)	12,118 (14.37)	144.45
	30-39	76 (16.63)	10,810 (12.82)	153.44
	20-29	65 (14.22)	12,737 (15.10)	187.13
	10-19	31 (6.78)	5,666 (6.72)	114.69
0-9	25 (5.47)	3,326 (3.94)	80.17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④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2.16. 0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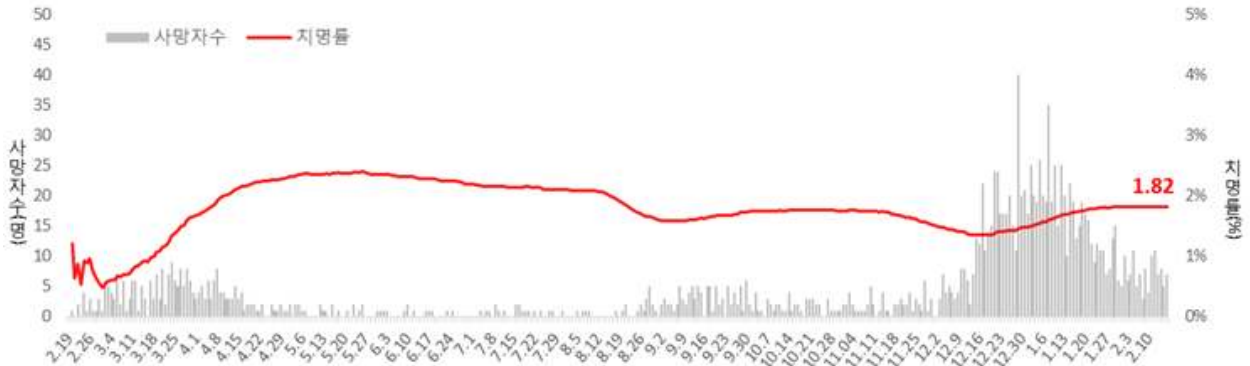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7 (100)	1,534 (100)	1.82
성별	남성	4 (57.14)	762 (49.67)	1.83
	여성	3 (42.86)	772 (50.33)	1.80
연령	80세 이상	4 (57.14)	872 (56.84)	20.91
	70-79	3 (42.86)	417 (27.18)	6.43
	60-69	0 (0.00)	176 (11.47)	1.33
	50-59	0 (0.00)	50 (3.26)	0.32
	40-49	0 (0.00)	12 (0.78)	0.10
	30-39	0 (0.00)	6 (0.39)	0.06
	20-29	0 (0.00)	1 (0.07)	0.01
	10-19	0 (0.00)	0 (0.00)	0.00
0-9	0 (0.00)	0 (0.00)	0.0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2.3.	2.4.	2.5.	2.6.	2.7.	2.8.	2.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계	220	211	200	197	190	188	189	184	170	161	157	156	156	166

구분	위중증	( % )
계	166	100.0
80세 이상	34	20.5
70-79세	59	35.5
60-69세	56	33.7
50-59세	13	7.8
40-49세	3	1.8
30-39세	1	0.6
20-29세	0	0.0
10-19세	0	0.0
0-9세	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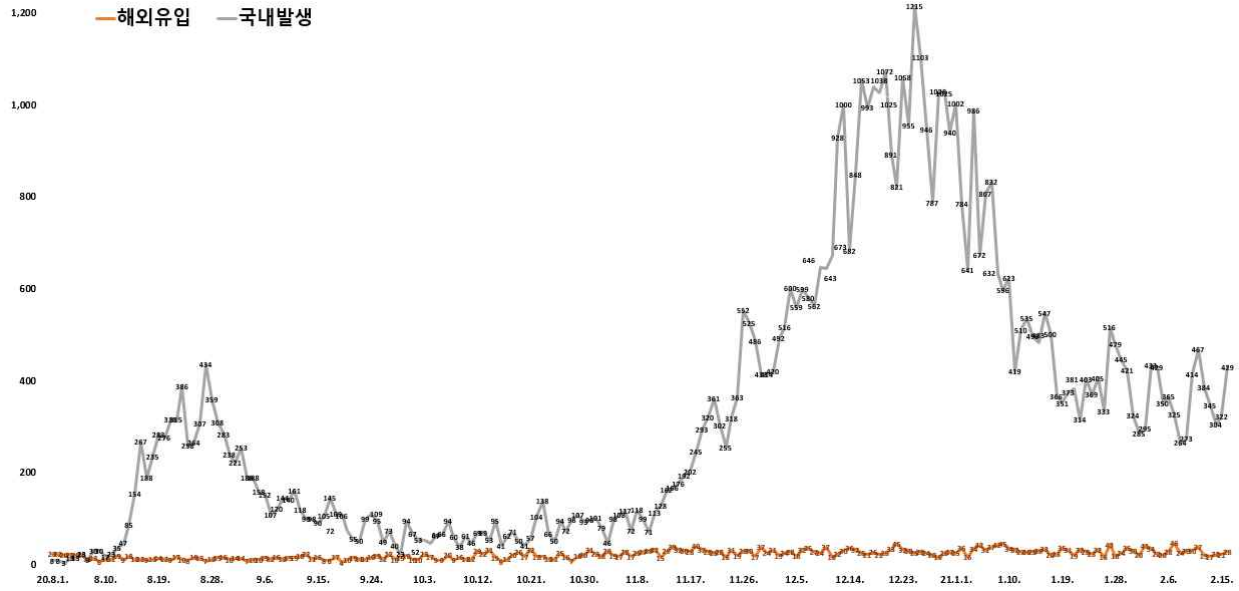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5 감염경로

###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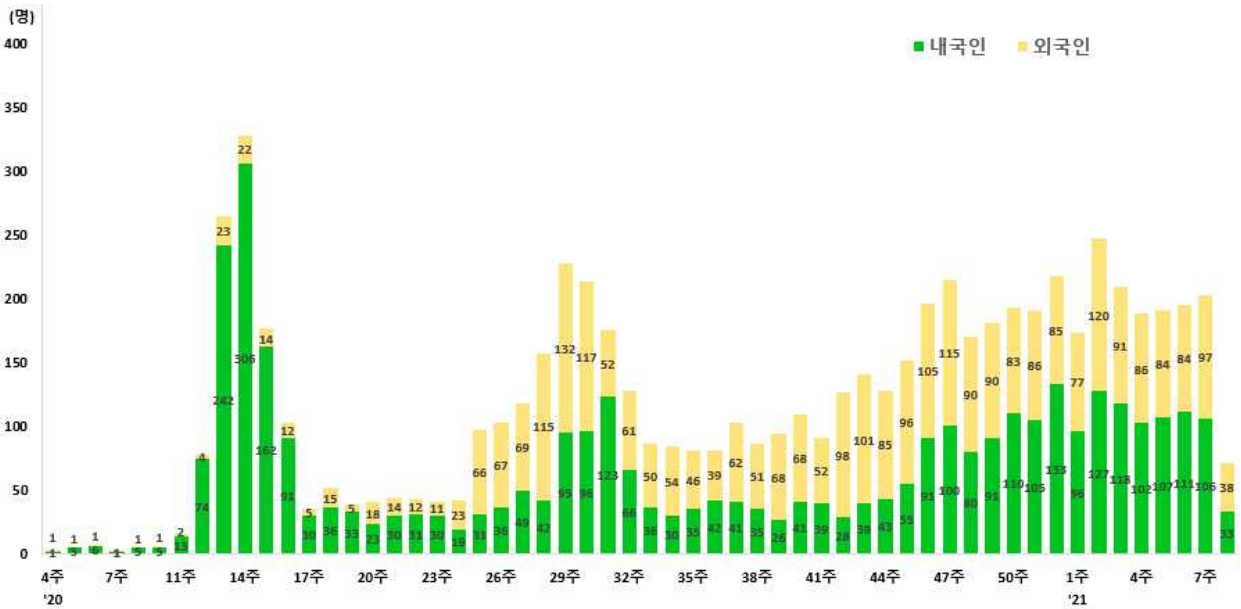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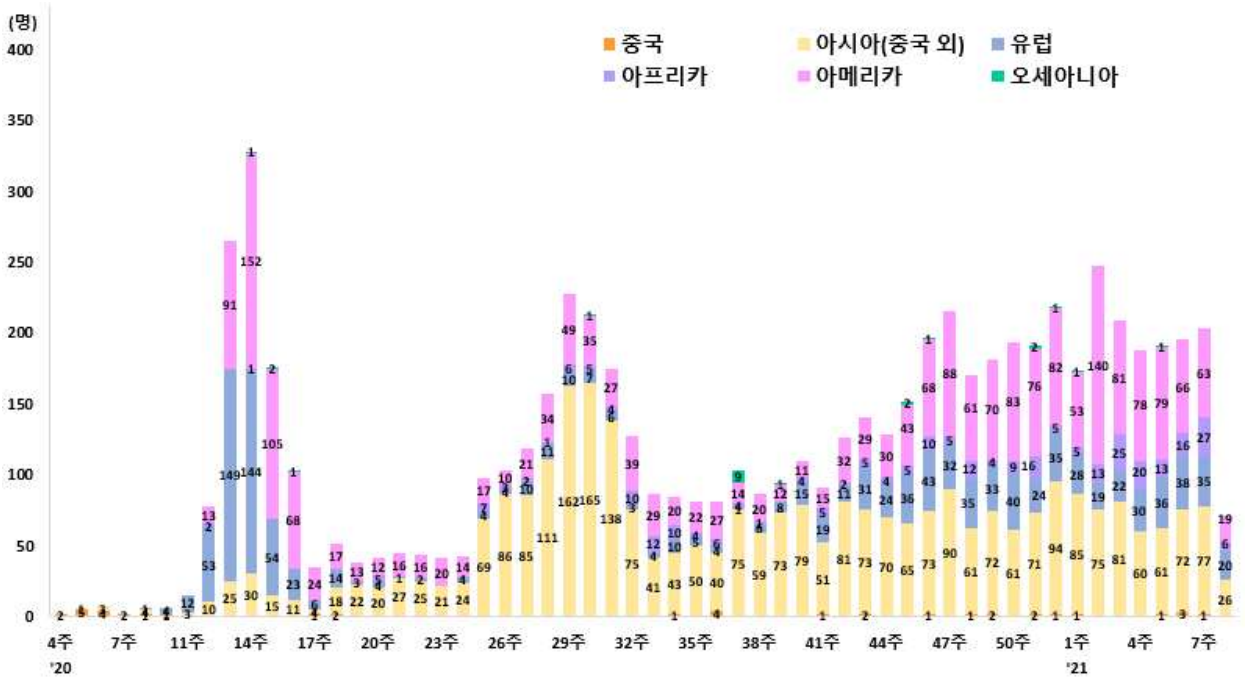
(단위: 명)



### < 최근 2주간 ('21.2.3일 0시~'21.2.16일 0시까지 신고된 5,482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관련	집단 발병	해외유입 관련				
서울	26,484	861	9,879	8	9,780	91	8,665	7,079	161	<b>&lt;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gt;</b>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서울 종로구 음식점/노래교실 관련(315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구광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 충북 고소읍성당신앙인생시병원 관련(42명) • 경북 상주시 BTJ열방센터 관련(808명) • 부산/울산 장구강습 관련(268명)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20명)  <b>&lt;최근 발생 주요 사례&gt;</b>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32명)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94명) • 서울 성동구 대학병원 관련(108명) • 서울 용산구 대학병원 관련(117명) • 경기 부천시 영생교/보습학원 관련(151명) • IM선교회 미인가교육시설 관련(419명)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72명) • 광주 서구 교회 관련(145명)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96명) • 부산 서구 향운노조 관련(67명)
부산	3,054	130	1,890	12	1,822	56	617	417	19	
대구	8,503	139	6,265	4,512	1,746	7	1,162	937	12	
인천	4,169	222	1,976	2	1,964	10	1,273	698	21	
광주	1,951	114	1,568	9	1,553	6	136	133	2	
대전	1,150	52	617	2	614	1	301	180	4	
울산	966	86	682	16	662	4	120	78	7	
세종	210	25	96	1	94	1	48	41	0	
경기	21,648	1,438	8,448	29	8,340	79	7,225	4,537	134	
강원	1,778	66	1,001	17	983	1	464	247	5	
충북	1,649	88	870	6	857	7	436	255	7	
충남	2,239	152	1,128	0	1,127	1	568	391	58	
전북	1,093	103	761	1	759	1	125	104	5	
전남	781	68	541	1	530	10	97	75	2	
경북	3,104	141	2,173	565	1,607	1	472	318	3	
경남	2,114	145	1,315	33	1,250	32	371	283	8	
제주	548	33	347	0	346	1	93	75	1	
검역	2,884	2,884	0	0	0	0	0	0	8	
합계	84,325 (%)	6,747 (8.0)	39,557 (46.9)	5,214 (6.2)	34,034 (40.4)	309 (0.4)	22,173 (26.3)	15,848 (18.8)	457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6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6.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검사소 수 (개소) <sup>1)</sup>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 <sup>2)</sup>	
신규	-20	34,597	34,548	0	49	0	82
서울	-18	11,889	11,874	0	15	0	40
경기	0	20,813	20,780	0	33	0	39
인천	-2	1,895	1,894	0	1	0	3
누계	104	1,857,438	1,835,831	4,235	17,324	48 <sup>2)</sup>	5,185
서울	28	859,756	851,815	1,485	6,436	20	2,731
경기	70	850,496	837,109	2,719	10,641	27	2,099
인천	6	147,186	146,907	31	247	1	355

1)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2) 양성 32건, 음성 16건

7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2.10.~2.16.)

구분	2.10.	2.11.	2.12.	2.13.	2.14.	2.15.	2.16.	주간누계	총 누계
계	77,291	81,260	41,983	36,663	50,892	43,312	85,227	416,628	8,070,928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 <sup>1)</sup>	42,618	39,985	23,361	21,968	24,749	22,774	50,630	226,085	6,213,490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건) <sup>2)</sup>	34,673	41,275	18,622	14,695	26,143	20,538	34,597	190,543	1,857,438
신규 확진자 수(명)	444	504	403	362	326	343	457	2,839	84,325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명) <sup>3)</sup>	98	87	81	58	30	50	82	486	5,185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 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 붙임 2 |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 누적발생 75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미국	27,309,503	480,464	87,896	3,317	1.76	8,250.61
인도	10,916,589	155,732	11,649	90	1.43	791.06
브라질	9,809,754	238,532	44,299	1,043	2.43	4,614.18
러시아	4,086,090	80,520	14,207	394	1.97	2,800.61
영국	4,038,082	117,166	10,972	258	2.90	5,947.10
프랑스	3,406,616	81,393	16,546	167	2.39	5,216.87
스페인 <sup>1)</sup>	3,041,454	64,217	-	-	2.11	6,498.83
이탈리아	2,721,879	93,577	11,060	221	3.44	4,498.97
터키	2,586,183	27,471	6,287	94	1.06	3,067.83
독일	2,338,987	65,076	4,426	116	2.78	2,791.15
콜롬비아	2,190,116	57,425	4,947	229	2.62	4,302.78
아르헨티나	2,025,798	50,236	4,245	48	2.48	4,481.85
멕시코	1,988,695	173,771	9,741	1,214	8.74	1,542.82
폴란드	1,591,497	40,832	2,542	25	2.57	4,210.31
이란	1,518,263	58,945	7,390	62	3.88	1,807.46
남아프리카공화국	1,491,807	47,899	1,744	78	3.21	2,515.69
우크라이나	1,273,475	24,392	2,332	62	1.92	2,914.13
페루	1,227,205	43,491	6,457	236	3.54	3,718.80
인도네시아	1,223,930	33,367	13,227	431	2.73	447.51
체코	1,090,860	18,250	2,851	107	1.67	10,194.95
네덜란드	1,029,284	14,816	3,497	23	1.44	6,019.20
캐나다	823,353	21,228	3,047	66	2.58	2,183.96
포르투갈	785,756	15,321	1,677	138	1.95	7,703.49
칠레	776,209	19,541	3,814	98	2.52	4,063.92
루마니아	761,963	19,366	1,872	41	2.54	3,968.56
방글라데시	541,038	8,285	772	19	1.53	328.50
필리핀	549,176	11,515	1,921	8	2.10	501.07
일본	415,782	6,952	1,310	40	1.67	328.68
헝가리	388,799	13,752	1,337	46	3.54	4,008.24
네팔	272,840	2,055	226	1	0.75	937.59
미얀마	141,601	3,189	16	1	2.25	260.30
중국	89,788	4,636	16	0	5.16	6.24
키르기스스탄	85,516	1,442	41	1	1.69	5.94
우즈베키스탄	79,442	622	26	0	0.78	62.80
태국	24,714	82	143	2	0.33	35.41
베트남	2,229	35	34	0	1.57	2.29
대한민국	84,325	1,534	457	7	1.82	162.68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sup>1)</sup>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p>▶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p> <p>*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p>
기타 모임·행사	<p>▶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p> <p>*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p> <p>▶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p> <p>▶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p> <p>▶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노래연습장	<p>▶ 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p> <p>*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p> <p>▶ <b>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b></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p> <p>▶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p> <p>▶ <b>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b></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파티룸	▶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①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b>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li> </ul>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b>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b></li> </ul>
영화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공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b>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b></li> </ul>
PC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ul>
오락실·멀티방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ul>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b>③ 기타 다중이용시설</b>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li> <li>▶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li> <li>▶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li> <li>▶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li> <li>▶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li> </ul>
<b>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li> </ul>
교통시설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li> <li>▶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li> </ul>
스포츠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내 입장</li> </ul>
등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밀집도 1/3 준수</li> </ul>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b></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li> <li>▶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li>-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li> <li>▶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li> </ul>



##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5. ~ '21.2.28.)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① 모임·행사</b>	
사적 모임	<p>▶ <b>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b></p> <p>* (제외)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p> <p>- <b>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b></p>
기타 모임·행사	<p>▶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p> <p>▶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p>
<b>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b>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b>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b></p> <p>▶ <b>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b></p> <p>▶ <b>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b></p> <p>▶ <b>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b></p>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p>▶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p> <p>▶ <b>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b></p> <p>▶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노래연습장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p>▶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p> <p>▶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p>
실내 스탠딩공연장	<p>▶ 음식섭취 금지</p> <p>▶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p>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p>▶ <b>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b></p> <p>▶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p> <p>▶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사·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p>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파티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b>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li> <li>▶ <b>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b></li> </ul>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li> <li>▶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li> </ul>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수용인원의 50%로 인원제한</b></li> <li>▶ <b>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b></li> <li>▶ <b>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b></li> <li>▶ <b>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b></li> <li>▶ <b>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b></li> <li>▶ <b>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b></li> <li>▶ <b>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b> *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li> </ul>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b></li> </ul>
결혼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li> <li>▶ <b>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b></li> </ul>
영화관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li> <li>▶ <b>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b></li> </ul>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b></li> <li>▶ <b>마스크 착용</b></li> </ul>
마트·상점 (30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스크 착용</li> <li>▶ 주기적 환기·소독</li> </ul>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b>② 기타 다중이용시설</b>	
숙박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b></li> <li>▶ <b>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b></li> <li>▶ <b>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b></li> <li>▶ <b>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b></li> </ul>
국공립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li> <li>▶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li> </ul>
사회복지이용시설	▶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b>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b>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위료기관·약국 등 시설 및 지자체에 협의·신고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li> <li>▶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li> <li>*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li> </ul>
직장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li> <li>*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li> <li>▶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li> <li>▶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li> </ul>

##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보도준칙

#### ■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 ■ 기본 원칙

#####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 2. 신중 감염병의 보도

-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중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학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사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의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은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등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 ‘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 ...홍콩독감 유입 땀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②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 ④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